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90
----------	-------

발의연월일 : 2025. 9. 4.

발 의 자 : 박해철 · 박균택 · 박 정
송옥주 · 권칠승 · 김정호
김동아 · 임호선 · 장종태
최혁진 · 조계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1990년대 제정 당시의 고용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등의 확산, 산업구조 전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대 요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일자리 전환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등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연 1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를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 일자리 전환과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며,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실업 시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30일”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u>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일하는 모든 사람</u> <u>의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 일</u> <u>자리 전환과 평생 직업능력 개</u> <u>발을 지원하며, 국가의 고용서</u> <u>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실업</u> <u>시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u> <u>하여</u> ----- ----- ----- -----.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 <u>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 ----- 「 <u>남녀고용평등과</u> <u>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u> <u>률</u> 」 제19조제1항----- <u>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u> <u>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u> ----- ----- ----- ----- ----- -----

지급한다.

② ~ ⑤ (생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